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 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신청시 본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070-5161-5504)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10.(월)**이며, **신청접수일(계약체결일)이 입주자격(신청자격,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하게 적용)**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공고는 미계약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계약방식) 신청자가 선착순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 체결하고 계약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확정 가능합니다.**
- **(신청유의)**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단지명	접수일시	유의사항
송산청광 플러스원	접수시작일 : '26.08.10.(월) ~ 모집 종료 시까지 접수 가능	※ 모집 종료 시 접수 마감되며 마감여부는 LH 청약플러스 게시

■ 모집절차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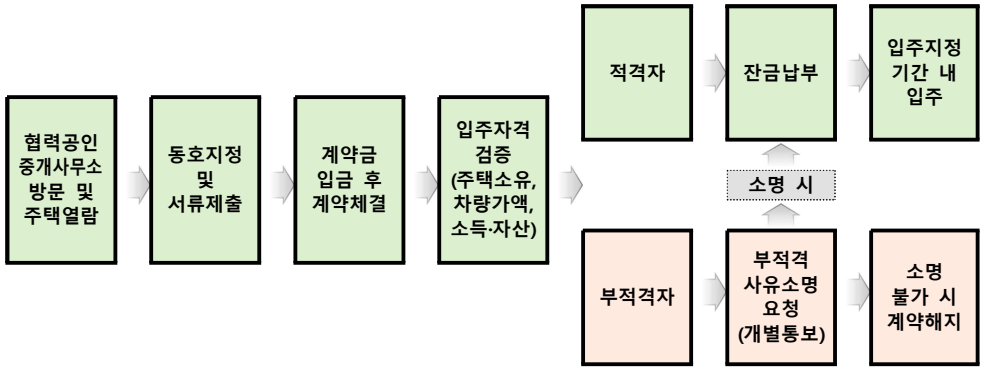

■ 공급대상 주택 : 총 18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보수 완료 시점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대상 단지

소 재 지				준공시기	전용면적(㎡)	단지규모(세대수)	단지최고층수	주차장출입구높이	임대호수	모집세대수		비고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당첨	예비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아파트	2016	49 59	299	10	-	37 41	18	-	

■ 임대조건

소 재 지				전용(㎡)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합계	계약금	잔금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산청광아파트	49	47,891,000	4,789,000	43,102,000	27,880
				59	56,616,000	5,661,000	50,955,000	53,540

■ 임대 기간(잔여기간)

소 재 지						전용(㎡)	임대 잔여 기간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	동	호수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아파트	101	103	49	본 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갱신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전환 시점(미정)까지 거주 가능하며, 분양전환 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우선 취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102	107		
				102	108		
				102	305		
				103	203		
				104	102	59	
				104	103		
				104	201		
				104	202		
				104	203		
				104	302		
				104	303		
				104	501		
				104	602		
				104	604		
				105	101		
				105	102		
				105	103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 대 료: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기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실시**

-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자격검색 적격 판정 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해당 주택단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1 감액보증금 [선택사항]

단지명(신청단위)	평형	임대보증금 감액시 임대조건(원)					임대료차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전환보증금	전환임대료	
송산청광플러스원 아파트	49	47,891,000	27,880	-43,000,000	4,791,000	153,296	+125,416
	59	56,616,000	53,540	-51,000,000	5,616,000	202,290	+148,750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동·호	임대호수	모집세대수	
						당첨	예비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1동 103호	5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2동 107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2동 108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2동 305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3동 203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102호	13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103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201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202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203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302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303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501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602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동 604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5동 101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5동 102호		1	-
충남	당진	송산면	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5동 103호		1	-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10.)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대학생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12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4. 8. 11.~2026. 8. 1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③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 8. 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1 **청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 08. 11. ~ 2007. 08. 10.)**

④-2 **대학생**: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⑤ **일반인**: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대학생)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교내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등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생)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 3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소득·자산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퍼센트 이하]
자산기준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5,450만원 이하**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21,550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주택소유여부의 자세한 판정기준은 공고문 하단 참조

□ **소득기준 금액(금액단위: 원)**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퍼센트 이하]

가구원수	청년 및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5,338,708원	140%		-
2인	7,626,151원	130%	8,799,405원	150%
3인	9,802,115원	120%	11,435,801원	140%
4인	10,562,642원	120%	12,323,083원	140%
5인	11,192,382원	120%	13,057,779원	140%
6인	11,887,516원	120%	13,868,768원	140%
7인	12,582,649원	120%	14,679,757원	140%
8인	13,277,783원	120%	15,490,747원	140%

*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제14조의3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p)

구분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23.03.28 이후 출산 없음 (기준)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	215,500,000원 이하	237,050,000원 이하	258,6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54,500,000원 이하	59,950,000원 이하	65,400,000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소요기간	절 차	장 소	일정 등 상세내용
사전 준비	**제출서류 준비**	각 서류별 발급처	• 자세한 구비서류는 (6. 제출서류)참고 ※ 제출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
계약 당일	**세대 열람**	청광플러스원부동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64-10 단지내상가 106호 **'26.08.10(월) ~ 모집마감 시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 지정된 날짜에 방문(화·수·목만 가능) • 동호지정 참여 명부 서명한 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순번 부여 •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동호지정 현장에서 공가세대 동호판 참고 가능) ※ 순번을 호명 받았으나,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차례를 놓친 경우 마지막 순번으로 동호지정
	서류제출 및 계약금 입금	서류제출 후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계약금 입금 (현장수납 불가)	• 제출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 •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입금 ※ 계약금 미납 시 계약불가
	명부 서명, 동호지정(선택) 및 계약체결	청광플러스원부동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64-10 단지내상가 106호 **'26.08.10(월) ~ 모집마감 시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26.08.10(월) ~ 모집마감 시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만** 가능	• 계약금 입금사실 확인 및 제출 서류 완비 시 계약체결 가능 ※ 동호지정 당일만 입금 및 계약체결 가능 (계약 당일 이후 권리 상실)
약 5주 (예정)	**주택사전점검**	당진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 계약체결 시 점검일정 개별안내
	자격 검증	4주 소요	• 신청자의 입주자격 적격여부 확인 (무주택, 자동차가액, 자산,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부적격자 소명	우편 안내 (부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 소명 ※ 소명 불가 시 입주 불가능(계약 해지)
	잔금납부 및 입주	-	•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입주안내 예정 • 입주지정기간 약 2개월 부여(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

구분	접수방법 및 일정	비고
동호지정 및 계약	**'26.08.10(월) ~ 모집마감 시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지정시간(16시) 내에 계약금 미입금 시 동호지정 무효 및 권리상실
	잔여세대 소진시 까지 목요일 가능 ※ 공휴일 제외	
	청광플러스원부동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64-10 단지내상가 106호	
입주자격 적격여부 최종통지 및 입주 안내	**자격검증 후 개별 안내** • 부적격자는 해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약금 공제없이 계약금 반환 • 단, 입주적격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 공제 후 반환	개별통지
입주	**개별통보(계약체결일 기준 약 5주 이후)** * 입주지정기간 약 2개월 부여(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	

▪ 금회 모집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하나,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한 요일을 제한하여 접수 진행하오니 청약희망자는 공급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공급형별 물량 소진 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동호지정 및 계약가능 여부	불가	불가	불가	가능	불가	불가
주택열람	가능					
접수시간	-	[오전] 10:00 ~ 12:00 [오후] 13:00 ~ 16:00 *점심시간 제외			-	-

*** 매월 격주 목요일 마다 계약 체결 실시**

▪ 금회 공고는 상시모집으로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나 **모집호수 소진 또는 공사 사정에 따라 모집이 마감될 수 있으며**, 모집마감 시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 관련 사항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 선정방법

▪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등에 상관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 여부, 자산(자동차), 소득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순서**

① 신청일 당일 접수 개시 시간(오전 10시) 이전에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추첨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②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접수 개시 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접수한 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접수대장 서명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불가 시간 : 오전 10시 이전, 점심시간(12시~13시) / 16시 이후는 접수 불가

동호지정 순번 부여 방법			
10:00 이전 도착	10:00~12:00 도착	점심시간(12:00~13:00) 도착	13:00~16:00 도착
순번 추첨	접수대장 서명 순번	순번 추첨	접수대장 서명 순번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접수대장에 다시 서명·등록하여 순번을 새로이 부여받아야 합니다.**

▪ 방문 고객 수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자동 신청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 계약금 현장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시간은 당일 10:00~16:00까지이며, 16:00 후에는 동호지정 절대 불가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 동호지정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해약신청 필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 반환됩니다. 단, 입주자격 적격 통지를 받은 계약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 이자 없음)**

■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 동의서 서명란에 대상자 전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		**입주자격완화각서**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		**선계약후검증각서**		
○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모두 해당) *** 한부모가족은 필수 제출**	
	○	**임신진단서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必)	의료기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청약저축통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통장 사본	청약가입은행 한국부동산원
	○	**배우자 소득관련 증빙서류 (맞벌이부부만 해당)**	· 취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등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영위 및 「소득법」에 따라 사업소득신고(세무서 발급) ※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형태로 근무 중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와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이 없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세무서등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신혼부부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대학생 추가서류		**졸업증명서**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해당교육기관
		제적증명서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세대구성 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공동신청 확인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예비배우자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입주일 전일까지 미제출시 입주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가족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제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대리인 방문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추가 확인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 청년신혼리츠사업 지원단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계약안내	• 금회 계약은 현장계약으로만 운영하며,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지정시간 내(10:00~16:00) 계약금이 미입금 될 경우 자동 신청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현장수납 불가)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입주자격 검증 후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해드리니,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열람	• 금회 모집공고는 **'26.08.10(월) ~ 모집마감 시 까지 주택열람 가능하며,** 청광플러스원부동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64-10 단지내상가 106호에서 안내 예정
임대조건	•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중복입주 제한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주택관리공단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이거나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기타사항	•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1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여야 하며, 주택에 빌트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한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신청자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금액은 당사자의 소득 및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에 산정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요약**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상세**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청년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18:00) - 연결 후 1번 → (상담사연결) → 2번(임대문의) → 3번(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 **공단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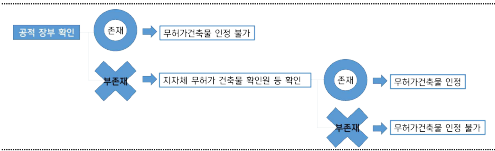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 검색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 . . .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복학(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현재 휴학 중(입학 전)이나 다음 학기 복학(입학)예정자로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다음 학기(00월)에 복학(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예비신혼부부만 제출] 공동신청 확인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아파트)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정보	☐	상기 신청인 (1), (2)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예비신혼부부만 제출] 세대구성 확인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아파트)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	
배우자		-	
		-	
		-	
		-	

20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세대분리된 한부모가족만 제출] 세대구성 확인서

본인 및 세대분리된 6세이하 자녀는 금회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법령의 취지를 감안 해당 주택의 입주시 아래와 같이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입주할 것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입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	
자녀		-	
		-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본인은 본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공고에 따른 신청자로서 재계약 시 아래와 같은 특수조건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재계약을 위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소득·총자산배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확 약 자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확 약 서

본인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26.08.10.공고) 신청자로서 금회 모집공고는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함"에 따른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1. 향후 입주자격에 흠결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가 동 계약을 직권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제(해지) 시 LH는 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입주자격 흠결이 아닌 계약자의 입주자격 검증관련 보완서류 미제출,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위약금을 LH공사가 징수함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관리공단 및 LH 공사로부터 최종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계약주택에 대한 이사일정 등 입주계획을 세울 것이며,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통보받기 전 임의로 이사 일정 등을 세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정차질,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확 약 자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